방송광고 판매대행 약관(방송사)

제정 2012.12. 1
개정 2020.11.30. 시행 2020.11.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방송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광고판매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라 합니다)간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신고 및 변경 등) ①이 약관은 방송광고판매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고를 한 것이고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②공사는 이 약관을 공사 홈페이지(http://www.kobaco.co.kr)에 게시하고, 방송사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공사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과 코바넷(KOBANET) 판매게시판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방송사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에 대해서는 공지 외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④공사가 제3항에 따라 변경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한 후 7일 이내에 방송사의 명시적인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방송사가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방송광고판매법 제5조에 따라 공사가 방송사로부터 위탁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 업무에 적용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습니다. <개정 2020.11.30.>

1. “방송광고”라 함은 방송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를 말합니다.
2. “방송광고 청약자”라 함은 공사에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광고주 및 광고주로부터 방송광고를 의뢰받아 공사에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방송편성”이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합니다.
5. “방송프로그램광고”란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합니다)에 편성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6. “중간광고”란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7. “토막광고”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8. “자막광고”란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를 말합니다.

9. “시보광고”란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10. “가상광고”란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를 말합니다.
11. “간접광고”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말합니다.
12. “광고요금”이란 공사가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방송광고를 판매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13. “시급”이란 시청률 또는 청취율을 고려하여 방송사와 공사가 협의하여 정한 방송광고 시간대별 등급을 말합니다.
14. “전파료”란 전파발사에 필요한 제경비 차원의 시설비, 전기료, 인건비 및 기타관리비 등의 개념을 요금에 반영한 금액을 말합니다.
15. “방송광고 전산시스템”이란 공사가 광고주와 광고회사에 방송광고 관련 업무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으로써 방송광고청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코바넷(KOBANET)과 방송광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방송사에 전송할 수 있는 코덱스(KODEX)시스템을 말합니다.
16. “운행불일치”란 청약자가 공사를 통해 방송사에 의뢰한 대로 방송광고가 방송되지 않거나 공사를 통해 방송사에 의뢰하지 않는 방송광고가 방송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7. “코덱스(KODEX) 시스템”이란 공사가 디지털 방송기술을 활용하여 광고소재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 저장 및 관리하고 디지털 파일로 변환된 광고소재(이하 “디지털 광고소재” 라 합니다)를 코덱스(KODEX)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사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18. “코덱스(KODEX) 네트워크”란 디지털 광고소재의 온라인 전송을 위해 공사와 방송사 사이에 연결되는 통신망을 말합니다.
19. “코덱스(KODEX) 수신프로그램”이란 코덱스(KODEX)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는 디지털 광고소재를 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솔루션을 말합니다.
20. “코덱스(KODEX) 서비스”란 청약자가 공사에 보낸 광고소재를 방송사가 코덱스(KODEX) 수신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광고소재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제공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21. “코덱스(KODEX) 장비”란 코덱스(KODEX) 시스템을 통해 수신 받은 디지털 광고소재를 방송사가 방송광고로 송출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를 말합니다.
22. “소재 전송료”란 방송사가 코덱스(KODEX)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과 방송광고판매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방송광고

제5조(광고요금 등의 책정) ①광고요금은 방송사가 제시하여 공사와 방송사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방송광고요금표’를 확정하여 방송사에 통지하고 방송광고요금표

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방송사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의제기 기간만료일에 방송광고요금표(광고요금 및 시급)가 확정됩니다.

제6조(광고요금 등의 공지) 광고요금과 시급은 제5조 제2항의 방송광고요금표에 따릅니다. 이 방송광고요금표는 공사 홈페이지(www.kobaco.co.kr)에 공지합니다.

제7조(개편)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을 개편하고자 하는 경우 개편 7일 전까지 공사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방송사의 사정으로 개편 7일 전까지 개편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방송프로그램의 변경) ①방송사는 천재지변 등 방송사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 합니다), 공공적 및 사회적 필요성 또는 방송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변경으로 인한 광고요금은 제9조를 준용합니다.

제9조(시급의 적용과 변경) ①방송광고가 복수의 시급에 걸쳐 방송되는 경우, 토막광고와 자막광고는 높은 쪽의 시급을 적용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전파료는 해당시급의 비율에 의합니다.
②방송광고가 다른 시급으로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급을 적용합니다. 다만, 가상광고는 시급이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도 당초 청약한 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1. 방송프로그램의 전후 방송프로그램광고가 각각 청약당시 방송 프로그램 편성표보다 낮은 시급으로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 광고요금은 변경된 시간대의 기본 방송프로그램 광고요금에 준하여 재산정합니다. 다만, 높은 시급으로 변경 방송된 경우에는 당초 청약한 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2. 토막광고 및 자막광고가 낮은 시급으로 10분 이상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는 실제 방송된 시급의 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급이 2시급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 변경된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1호의 시급변경을 동반한 시보광고의 시급변경에 따른 광고요금은 변경된 시간대의 기본방송프로그램에 준하여 재산정합니다. 다만, 네트워크 지역지상파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시보광고 시급변경에 따른 광고요금은 제2호의 토막광고의 시급변경에 따른 광고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10조(판매방식) ①공사는 방송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판매방식을 운영한다. <개정 2020.11.30.>

1. 복수의 방송광고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패키지 판매방식(단, 제11조의 '방송광고결합판매'는 제외합니다)
2. 판매기간에 따른 판매방식
   가. 업프런트(Upfront) 판매 : 3개월 이상 단위 판매
   나. 정기물 판매 : 2개월 이하 단위 판매
   다. 임시물 판매 : 단 건에서 1개월 이하 단위 판매

3. 공사가 사전 지정한 방송광고를 대상으로 보다 높은 광고요금을 제시하는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판매하는 프리엠션(Preemption) 판매방식
4. 공사가 사전에 정한 방송프로그램광고순서 지정대가를 부담할 경우에 방송광고 청약자가 방송프로그램광고의 방송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프로그램광고순서 지정판매방식
5. 시청률 요인, 방송광고 시장의 변동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시청률, 청약횟수 등을 보장하거나 청약액을 확정하는 판매방식

- 총시청률(Gross rating points) 보장판매, ROS(Run of Schedule)판매, 월 청약액 확정 판매 등

②공사는 방송사와 협의하여 방송광고 판매방식에 따라 방송광고요금표상 광고요금의 할인 및 할증,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에 따른 판매방식 및 그 변경이나 폐지, 제2항에 따른 광고요금의 할인 및 할증,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은 방송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그 내용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로 사전고지합니다. 다만, 협의된 내용을 광고1번지 등 판매정보지와 코바넷(KOBANET)에 게재함으로써 사전고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1.30.>

제11조(방송광고 결합판매) 공사는 방송광고판매법 제20조에 따라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합니다.

제12조(방송광고 판매제한) 공사는 광고주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13조(방송광고의 운행) ①방송사는 공사가 판매대행하는 방송광고가 방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여 방송합니다.

②공사는 방송사가 사전 고지한 방송편성일정에 따라 광고방송 개시 전에 방송광고의 운행의뢰와 방송광고판매신탁서 및 방송광고를 방송광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방송사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의 변경 등으로 방송광고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공사는 전화, 팩스,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방송사와 협의하여 운행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는 방송광고의 운행의뢰를 한 후 1주일 이내에 방송사에게 방송광고 전산시스템으로 송부합니다.

③방송사는 공사가 제2항에 따라 송부한 내용대로 방송광고를 방송합니다.

제14조(방송광고 운행불일치) ①방송광고 운행불일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공사 또는 방송사의 착오로 방송광고 청약자의 방송광고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가. 편집착오 : 구 광고소재 사용, 광고소재 착오, 방송광고 기간 착오
   나. 초수 짤림
   다. 비디오, 오디오 불량 등
2. 방송광고 청약자가 청약하지 않은 방송광고가 방송된 경우 및 시간대 착오, 법적 허용량 초과 방송광고물 등
3. 방송광고 청약자의 귀책사유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된 경우 등

②제1항의 제1호, 제2호의 경우 해당분의 광고요금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③제1항의 제3호의 경우 광고요금을 방송광고 청약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청약 및 편성 변경 등의 사유로 광고요금이 변동되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청약자, 방송사, 공사가 협의하여 달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1.30.>

제15조(판매현황 송부) 공사는 당해 월간 방송광고 판매현황을 익월 10일까지 방송사에게 송부합니다.

제2장의 1 간접광고에 관한 특례

제16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습니다.

1. “노출”은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화면에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2. “노출횟수”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시행된 노출의 횟수를 말하며, 이때 1회는 한 회 방송분당 한 장면(scene)에서 상표, 로고 등이 노출되었을 때로 정의합니다. 단, 청약사항에 따라 1초 노출 또는 방송프로그램 1회 방송을 노출 1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간접광고 판매의뢰서”는 공사에 간접광고 판매를 의뢰하기 위하여 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노출하고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노출 가능한 간접광고의 유형, 노출방식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4.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는 방송광고 청약자가 판매의뢰서를 토대로 노출품목, 노출방식 등 간접광고 노출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기술한 서류를 말하며 방송사가 수락하면 방송광고 청약자, 공사, 방송사간 간접광고의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제17조(예고방송, 재방송, 연장방송 등) ①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예고방송되거나 재방송된 경우, 그 예고방송 및 재방송에 대해서는 간접광고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②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연장방송된 경우, 연장방송분에 대한 간접광고요금은 공사와 방송사간 협의하여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③간접광고의 시급이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도 당초 청약한 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제18조(간접광고 판매의뢰서 통지) ①방송사가 기획하여 방송하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노출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사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 판매의뢰서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와 방송사의 업무 담당자 간 사전 협의에 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된 간접광고 판매의뢰서의 내용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방송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9조(간접광고 이행의뢰서 송부) ①방송사의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간접광고 청약자”라 합니다)는 청약사항에 관하여 해당 공사 영업담당자와 협의한 후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작성하여 코바넷(KOBANET)시스템을 통하여 공사에 송부합니다.

②공사는 간접광고 청약자로부터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수령했을 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코바넷(KOBANET)시스템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방송사에 송부합니다.

③제2항에 따라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송부할 때, 공사는 방송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간접광고 이행의뢰서의 중요내용을 방송사에 설명합니다.

제20조(계약성립) ①방송사가 제19조에 따라 코바넷(KOBANET)시스템으로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송부받고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 약관 및 간접광고 이행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방송사, 공사 및 간접광고 청약자간 간접광고 판매계약(이하 "간접광고 판매계약"이라 합니다)이 성립합니다.
②방송사가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며, 그 때에 간접광고 판매계약이 성립합니다.
③방송사가 간접광고 청약자의 간접광고 이행의뢰서 내용대로 간접광고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사에 유선 또는 문서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간접광고 판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21조(계약이행) 방송사는 제20조에 따라 성립된 간접광고 판매계약의 내용대로 이를 방송하여야 합니다.

제22조(상호협력) ①공사는 방송사에게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및 간접광고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공사는 간접광고 판매대행업무의 진행사항을 적시에 방송사에게 통보하며, 방송사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③공사와 방송사는 간접광고 판매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 및 연락할 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며, 업무담당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3조(권리귀속 등) ①공사와 방송사가 간접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하거나 획득한 판매의뢰서, 간접광고물, 기술, 설계 등의 모든 권리의 귀속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공사와 방송사는 방송사가 공사에게 제공한 판매의뢰서, 이행의뢰서 수정안과 간접광고물 등으로부터 발생한 법적 문제나 저작권 등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제24조(불완전 방송 또는 불능 등) ①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간접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방송이 지체되거나 불완전 또는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해당 방송분의 간접광고요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불가항력에 의하여 간접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방송이 지체되거나 불완전 또는 불능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성질, 방송사의 간접광고 제작 및 간접광고 청약자와의 협의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와 방송사가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제25조(간접광고의 특례) 간접광고 영업대행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약관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되, 이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특례 조항에 따릅니다.

제3장 코덱스(KODEX) 시스템

제26조(이용 등) ①방송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코덱스(KODEX) 시스템을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공사의 코덱스(KODEX) 시스템에서 광고소재를 수신하기 위한 방송사의 수신 장비의 설치 및 사용

에 관한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하며, 그 사용에 따른 책임은 방송사에 있습니다.
③공사는 방송사에게 코덱스(KODEX) 수신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다만, 코덱스(KODEX) 수신프로그램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공사에게 있습니다.
④방송사는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코덱스(KODEX) 수신프로그램 및 수신받은 디지털 광고소재를 방송광고 송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무단사용 시 방송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7조(업무분담) ①코덱스(KODEX) 시스템과 관련하여 공사와 방송사간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사의 업무범위
   가. 방송광고 청약자가 방송사에 전달하기 위하여 공사에 보낸 방송광고소재를 디지털 광고소재로 변환 하는 업무
   나. 디지털 광고소재를 관리·전송하는 업무
2. 방송사의 업무범위
   가. 광고방송을 위해 디지털 광고소재를 수신하는 업무
   나. 광고방송을 위해 수신된 디지털 광고소재를 편집 및 운행하는 업무

②공사와 방송사간 합의로 제1항의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공사와 방송사는 각자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장 광고요금 등 지급

제28조(광고요금의 지급 등) ①공사는 광고요금을 3개월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은행도어음 또는 공사와 약정한 카드결제로 당해 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25일까지 방송사에 지급합니다. 단 공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일 내에 광고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와 사전 협의하여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광고요금이라 함은 공사가 당해 월 판매한 총 광고요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제29조(수탁수수료) 방송사는 광고요금의 100분의 13에서 100분의 16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수탁수수료를 공사에 지급합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광고요금의 100분의 13부터 100분의 18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수탁수수료를 공사에 지급합니다.

제30조(소재 전송료) ①공사는 코덱스(KODEX) 서비스와 관련하여 광고소재의 디지털 전환 관련 장비의 감가상각,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코덱스(KODEX) 수신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소재 전송료를 책정합니다.
②제1항의 소재 전송료는 방송광고판매법 제5조 제2항의 방송사 및 공사와 방송광고 판매대행 기본계약을 맺은 방송사들에 대하여는 면제합니다.

③소재 전송료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는 방송사와 공사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제5장 기타사항

제31조(계약의 체결) ①이 약관에서 협의하거나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 것과 기타 약관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와 방송사간 “방송광고판매대행 기본계약서”에 따릅니다.

②제1항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방송사는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에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1. 방송국 허가증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인감증명서 4. 무선국 검사필증 5. 가시청구역도 6. 방송구역 내 가구수/ 인구수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인감증명서 4. 방송채널임대계약서

제32조(계약기간 등) 이 약관의 계약기간은 공사와 방송사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서명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공사나 방송사가 계약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됩니다. 다만 제31조의 방송광고판매대행 기본계약서에 그 유효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약관의 계약기간도 이에 따릅니다.

제33조(처분금지) 공사와 방송사는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제34조(비밀유지) ①공사와 방송사는 이 약관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양자를 통칭하여 이하 “비밀정보”라 합니다)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약관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방송광고 청약자와 간접광고 제작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자(삼자를 통칭하여 이하 “방송광고 관련자”라 한다)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②공사나 방송사가 방송광고 관련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비밀유지의무를 방송광고 관련자에게 부과하여야 합니다.

③공사나 방송사는 비밀정보를 이 약관상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35조(손해배상 등) ①공사 또는 방송사는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이 약관의 이행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

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합니다.

제36조(약관의 이행 등) ①공사와 방송사는 이 약관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방송광고판매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준수하며, 공사는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②이 약관의 어느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불능 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고 집행가능합니다.

③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이나 방송광고판매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고시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와 방송사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습이나 상법에 따릅니다.

제37조(분쟁해결) 이 약관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와 방송사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0.>

이 약관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